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발전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50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지역발전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9조제3항제1호) ..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4. 27.
3. 회 부 일 : 2026.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1호).

III. 검토의견

1. 지역발전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안 제29조제3항제1호)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위원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명칭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 · ② (생략)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1. 재정경제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교육부장관 · 외교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국무조정실장 · <u>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u>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 ----- ----- ----- ----- ----- <u>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u>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법률 제7992호, 2006. 9. 27. 제정)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은 중

양 행정기관의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등으로 구성되었음.¹⁾

이는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이다.²⁾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629호, 2009. 4. 22., 일부개정)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³⁾되었고,

법률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⁴⁾을 통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92호, 2006. 9. 27., 제정)

제2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③ 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문화관광부장관 · 산업자원부장관 · 정보통신부장관 · 환경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국무조정실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 제7061호, 2004. 1. 16., 제정)

제2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9629호, 2009. 4. 22., 일부개정)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

제23조(조직)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9629호, 2009. 4. 22., 일부개정)

부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장으로” 개정⁵⁾한 바 있으며, 이후 현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계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이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개정⁵⁾한 바 있고,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정)을 통하여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명칭은 “지방시대위원회”로 변경⁶⁾되었음.

그러나,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위원회 명칭 변경은 누락되었음.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5489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29조제3항제1호의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명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되었어야 하나, 반영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종전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로 변경되었으므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개요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연혁) '04년 최초 설치, 제9기('26.2. ~ '28.2./29명) 운영 중
-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 (주요 심의사항) △기본방향 및 제도,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 △점검 및 평가 등
- (위원 현황)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포함 30인 이내
 - (위원장) 1인(대통령 위촉), (부위원장) 2인(대통령 위촉 1, 문체부 장관 1)
 - (민간위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비상임, 15인 이내)
 - (정부위원) 각 부처* 장관(10개 부처),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등 15명
 - * 문체부, 재경부, 과기부,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산업부, 기후부, 국토부, 예산처
- (임명절차) 후보 추천 → 인사검증 → 임명제청(문체부) → 대통령 임명

□ 제9기 위원회 위원 명단

위촉직 위원(14명) * 가나다 순			당연직 위원(15명)	
이 름	소속 및 직책	비 고	직 위	비 고
김원중	문화예술인(가수)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부위원장
김미소	DMZ 피스트레인 페스티벌 총감독	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위원
김병수	도시기획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박시양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	교육부 장관	"
박예원	문화예술컨설팅 RYU 대표	"	외교부 장관	"
설정환	옥천문화연구원 소장	"	행정안전부 장관	"
유재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산업통상부 장관	"
윤성진	(사)한국문화기획학교 이사장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윤진석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이사	"	국토교통부 장관	"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기획예산처 장관	"
정민룡	광주북구 문화의집 관장	"	국무조정실장	"
정원옥	(사)문화사회연구소 이사장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최병숙	전북대주거환경학과 교수	"	사회수석비서관	"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이사 겸 발행인	"	광주광역시장	"
			전라남도지사	"